



“로봇 안전 관련 규제 동향 및 법적 이슈 검토”

2021. 12. 16.
첨단제조로봇 전문가 워크샵



최수경

대한민국 변호사
미국 운항관리사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1종) 조종자

現) 법무법인 혜강 구성원 변호사(서울사무소 주재)
現) 한국로봇산업협회 전문위원
現) 서울시 양천구 노동법률센터 법률자문 위원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前) AK홀딩스(주) 리스크관리팀 법무담당
前) 스마트 법률사무소
前) 법무법인 사람
前) (주)제주항공 안전보안본부 항공안전관리 담당



목차

- 01 관련 정책·규제 동향
- 02 산업재해 관련 법적책임
- 03 제조물 책임



01. 관련 정책 및 규제 동향

규제리스크 관리: 관련 정책·법규 동향 파악



동향: 인공지능 관련 법률안 발의 현황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률안

의안명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윤영찬의원 등 12인	2021. 11. 24.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31인	2021. 07. 19.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인공지능법 제정안')	정필모의원 등 23인	2021. 07. 01.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	안민석의원 등 10인	2020. 05. 17.	교육위원회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2020. 10. 29.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집적단지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송갑석의원 등 11인	2020. 10. 19.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23인	2020. 09. 03.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1인	2020. 07. 13.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동향: 인공지능 관련 법률안 발의 현황



법률안 주요 내용

인공지능 관련 용어 정의

- ◎ 두 법안은 인공지능을 “인간의 지능을 가지는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자연언어 이해 등의 기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으로 정의함
- ◎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서비스’, ‘인공지능윤리’, ‘인공지능산업’, ‘인공지능전문기업’, ‘인공지능사업자’ 등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인공지능 윤리

- ◎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제31조 [인공지능윤리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함]
 - ① 인간의 생명, 신체 건강에 해악이 없도록 안정성, 신뢰성 확보
 - ② 취약계층의 접근 용이성
 - ③ 인간과 인류의 삶과 번영에 대한 공헌
- ◎ 인공지능법 제정안 제7조 [사업자·이용자의 윤리 개별 규정(사업자 ↓)]
 - ① 인간의 기본권 불가침
 - ② 개인 및 공동체 전체의 선의 불가침
 - ③ 생태계 포함 생명공동체의 지속가능성 불가침
 - ④ 정보통신기술 및 생명과학기술 관련 윤리 사항 준수
 - ⑤ 목적 및 기능 설정 및 준수
 - ⑥ 사용연한 정하고 폐기 지침 마련

동향: 인공지능 관련 법률안 발의 현황



법률안 주요 내용

우선허용 및 사후규제 원칙	<p>◎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제17조</p> <p>국가로 하여금 (민간 부문)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실증, 시험, 성능 검증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이러한 활동들이 국민의 생명, 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함</p>
인공지능기술의 보호	<p>◎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제36조</p> <p>인공지능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인공지능기술의 구조, 내용 또는 알고리즘에 대한 정보 또는 데이터를 타인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제공 또는 공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p> <p>단, 서면 동의 및 법원 영장 등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p>
인공지능산업 지원	<p>◎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제12조 인공지능기술 개발 지원</p> <p>◎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제13조 전문인력 확보</p> <p>◎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제19조 인공지능 전문기업 지원</p>

동향: 인공지능 관련 법률안 발의 현황



법률안 주요 내용

인공지능의 신뢰성 등 확보

◎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제17조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개발, 제작 시 준수사항 규정

◎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제32조 제2항, 제33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위험성 최소화 및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 의무를 부여하고, 인공지능 관련 단체의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자율 검증, 인증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함

◎ 인공지능법 제정안 제14조

인공지능기술의 안정성, 신뢰성, 상호운용성 등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기술 기준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표준화 관련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인공지능제품의 비상정지

◎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제38조

제품 설계, 제작, 생산 시 제품의 고장, 결함 또는 이용자의 오용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비상정지 기능을 인공지능제품에 적용하여야 함

동향: 인공지능 관련 법률안 발의 현황



법률안 주요 내용

인공지능 운용 사실 고지

일정한 영역에서 사용되는 인공지능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할 의무를 부과

◎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제34조

법률상, 사실상의 대우나 취급 또는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판단 또는 평가를 목적으로 운용 시 고지의무

◎ 인공지능법 제정안 제20조

특수한 영역(의료, 일상생활 유지, 범죄수사, 원자력, 개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변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보통신서비스제공 등)에서 사용되는 인공지능으로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위험 있는 특수활용 인공지능 사용 시 고지의무

특수활용 인공지능에 대한 제한

◎ 인공지능법 제정안 제20조

인공지능 운용사실에 대한 고지 의무 규정 이외에도 특정한 경우에는, 특수활용 인공지능에만 의존하여 최종적인 평가 또는 의사결정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향: ESG와 Compliance



ESG: 기업 지속가능성의 핵심지표



○ ESG 경영

- 재무적 요인 이외 비재무적 요인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을 경영할 것이 요구됨
- 기업 평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활동 요구 수준에 그치는 것 아님
- ESG 경영을 위해서는 기업의 의사 결정의 쉰단계에서 ESG 요소를 고려될 수 있어야함

○ ESG 규제와 Compliance

- 기업에 대한 의무 확대 요구되면서 규제 강화
- 입법[법률 제·개정], 행정[정부 정책, 감독·제재 활동], 사법[양형기준, 판례]
- ESG 규제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Compliance** 체계 구축 또는 재정비 필요

동향: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입법 예고된 법률안 주요 내용

<p>상법 개정안 (법무부)</p>	<p>상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안 제66조의2)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상인은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다만 상인이 해당 손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러한 책임이 배제될 수 있도록 규정</p>
<p>집단소송법 제정안 (법무부)</p>	<p>현행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는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에 한정되었으나, 제정안에서는 “구성원 50인 이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집단소송이 적용 가능함</p>
<p>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p>	<p>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은 소비자 단체소송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제기단체 범위를 확대하고, <u>소송허가제를 폐지</u>하였으며, 직접적 침해 발생의 경우 뿐 만 아니라 <u>소비자 권익의 현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단체소송 가능</u></p>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

(시행령)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인과관계 명확성, 예방가능성, 피해심각성)

(별표1) 직업성 질병 목록: 24개, 뇌심혈관계/근골격계 질환 제외

➤ 보호대상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노무제공자 + 단계별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 노무제공자는 "계약 형식 불문, 그 사업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

➤ 책임주체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권한·책임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하면서 +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조치를 해야함

(判) 사업의 전체적 진행과정을 총괄, 조율할 능력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 법령상 의무: “안전보건확보의무” (제9조)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조치

(시행령)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가능한 업무처리절차 마련, 이행상황 점검 (위험성 평가 실시로 갈음 가능)
-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예산 집행, 관리 체계 마련
- 안전보건업무 전담조직 설치(상시 근로자 수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 수렴 절차 마련 및 개선, 점검
- 사업장에서 발생가능한 위험에 대비한 사전적, 사후적 매뉴얼 수립 및 점검
- 도급, 용역, 위탁 시 재해예방, 안전관리 등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기준과 절차 마련, 이행상황 확인 및 점검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조치

3. 행정기관 등의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조치

4.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시행령)

- 반기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아야 함
- 점검결과, 이행되지 않는 내용이 있는 경우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하여 법령상 의무 이행되도록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유해/위험한 직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여부 확인하고 예산 확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불이익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처벌(제6조)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상해/질병)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형 확정 후 5년 이내 위반 시 가중(최대 1/2)

- 양벌규정(제7조)

(사망) 50억원 이하 벌금

(상해/질병) 10억원 이하 벌금

- 징벌적 손해배상(제15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있을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

-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 발생(제8조)

- 형 확정 사실의 통보(제12조)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제13조)



산안법상 주요 의무

- 안전조치(제38조) 및 보건조치(제39조)
- 작업 중지 및 안전보건상 조치 수행(법 제54조)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는 “즉시” 작업 중지시키고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실시
- 중대재해보고(법 제55조)
중대재해(사망자 1인 이상, 3개월 이상 치료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이상, 부상자나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발생시 즉시 관할 경찰서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중대재해발생보고서 제출
- 재해발생보고(법 제57조 3항)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을 요하는 부상, 질병의 경우 재해 발생 1개월 내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사항

➤ 주요 사항

-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승인 의무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안전보건계획에 요구되는 내용)

-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 안전보건 관리 조직의 구성, 인원 및 역할
-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 안전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연도 활동계획 수립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겸직 및 위탁 금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관계 수급인 등의 안전보건조치확인
- 위험 발생 우려 시 작업 시기·내용 등의 조정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양형기준 상향



대법원 양형기준 상향

➤ 2021. 3. 29. 대법원 양형위원회 최종 의결, 현재 시행중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 범죄

3월 29일 최종 의결 예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범죄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법정형(징역형): 7년 이하 징역

	감경	기본	가중	특별가중	다수범	신설 5년 내 재범
기존	4개월~ 10개월	6개월~ 1년6개월	10개월~ 3년6개월	10개월~ 5년3개월	10개월~7년 10개월15일	-
수정안	6개월~ 1년6개월	1년~ 2년6개월	2년~ 5년	2년~ 7년	2년~ 10년6개월	3년~ 10년6개월

※ 특별감경인자: '상당 금액 공탁' 삭제, 자수·내부 고발 등 추가
 특별가중인자: 유사한 사고 반복적 발생, 다수 피해자 발생

[출처] e대한경제 기사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03292014196260355>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합)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 증명책임

➤ 증명책임

- 소송상 자신의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 해야하는 책임
- 불확정적인 경우 주장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취급되는 위험 또는 불이익을 부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단서에 따라 증명책임이 분배/전환되는지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수의견 대법관 9명 vs. 반대의견 대법관 4명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상당인과관계 증명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증명



02. 산업 재해 관련 법적 책임

산업 재해 관련 주요 법적 책임



01

행정 제재

02

형사 처벌

03

민사 손해배상

노동법과

제23조(안전조치) 3-2.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1조의2(영업정지의 요청 등) 1.
23조 등을 위반하여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의 경우



행정 제재



행정 제재 효과: 기업 경영상 직·간접적 불이익 발생



이러한 행정 제재는 계속해서 강화되는 추세

형사 처벌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업무상
과실치사상

책임주체에 따라
경합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

의무위반으로 인한 사망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의무위반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법리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264 판결 등).

[판례]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두고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성립(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판결)

[판례]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 통제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 사업장을 직접 관리, 통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취할 수 있는 보건조치가 있을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 의무가 있고, 이러한 조치 취하지 아니한 채 타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알면서도 방치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성립



산업재해 관련 형사처벌

(사례) 대법원 2013도1602 판결 내용 발췌

- 폐기물 상차작업 현장에서 피해자의 화물차량 옆에 집게차를 세우고 그래플을 조작하여 폐기물 포대를 옮기는 작업중에 그래플로 폐기물 적재함 위에 서 있던 피해자 머리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적재함 아래로 떨어져 사망
- 집게차 운전자와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현장소장에 대해서는 현장에서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의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
- 위 현장소장과 사업주(회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기소(현장소장의 경우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안법위반죄 경합범)
- 1심과 2심 모두 무죄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부주의한 집게차 조작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는 유죄라고 판단함



형사 책임 관련 수사 대응

- 수사기관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와 그 의무이행자를 특정하고, 의무의 이행 여부, 의무 위반사실과 재해 발생과의 인과관계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법률적 쟁점에 유의하여 적절한 대응 필요
- 대응 과정에서 시간적 지체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향후 분쟁의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을 수 있음
>> 가급적 외부 전문가 조력 받을 것을 권장



손해배상 관련 제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 청구인이 신청(사업주 동의 不要)
 - 근로복지공단 지급(행정처분)
 -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3일 이하 요양 등) 사업주가 직접보상
 -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의비 등
- **민법상 손해배상**
 - (산재보험급여 or 근기법 재해보상을 초과하는)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 휴업손해, 일실손해,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 *형사합의금
-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cf. 단체상해보험)**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민사 손해배상책임 개요

➤ 민사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근거

- 법령상 의무 위반
- 근로계약상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보호의무) 위반 ★

[판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판례]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 책임 범위

- 민사소송상 손해배상책임은 사용자-재해자 **과실비율**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제한함(과실책임)
-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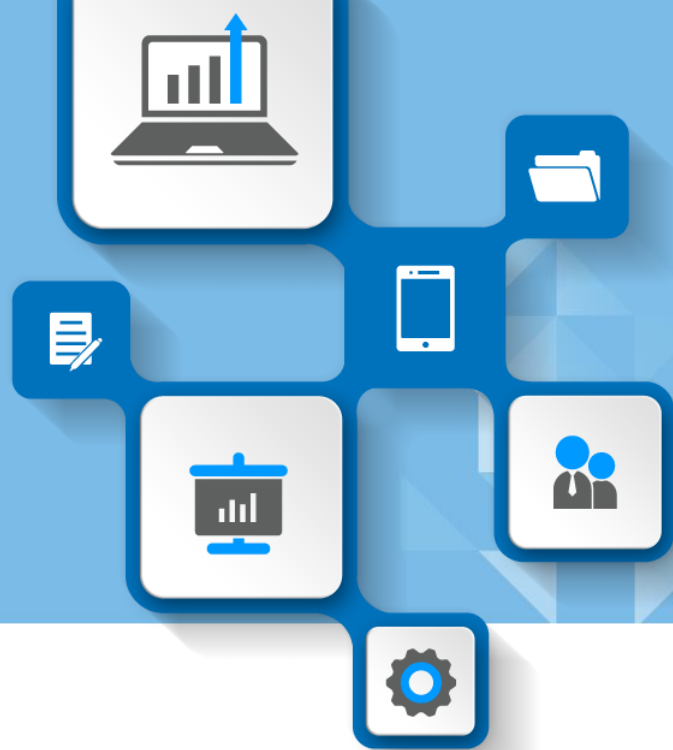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안전보건 관련 조치의 이행 및 그 문서화”는
사전적 재해 예방을 위해 필수적 조치이자 추후 법적 의무 이행 관련 증명자료의 확보

대응방안: 보호의무의 사전적 이행

- 사전적 조치를 통한 보호의무 이행 및 증빙자료 확보
 - 조직 정비, 업무 분장 및 보고체계 확립
 - 유해, 위험요인의 정의 및 요인별 점검, 개선 활동 (e.g. 위험성 평가 활용)
 - 안전보건 외부 동향 파악 및 내부 규정 정비
 - 안전보건프로세스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임직원 교육, 점검
 -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문서화
 - 유사 시 보고 체계, 절차별 업무, 업무별 담당자 지정 및 역할 분담 등 가이드가 될 수 있는 비상대응매뉴얼 수립하고 정기적인 훈련 필요



03. 제조물 책임

제조업자 등의 제조물책임



제조물책임 개요

➤ 입법 취지

산업 기술의 고도화 등으로 피해자가 제조업자의 고의, 과실과 인과관계 등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증명책임을 완화해주기 위함

➤ 요건

- 요건: 제조물에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그 결함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될 것
- 아래 사실들을 증명하면 제조물 결함 존재와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함(법 제3조의2)
 - ① 해당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 ②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 ③ 그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제조물책임 관련 주요 쟁점



“제조물”

➤ 제조물이란

- 제조되거나 가공된 모든 동산을 의미
- 첨단제조로봇도 제조물에 해당

➤ 소프트웨어의 제조물 해당여부

- 소프트웨어 로봇, 로봇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제조사가 다른 경우
-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성을 인정하는 견해 v. 부정하는 견해
- 임베디드(embedded)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성
- 프로그램을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공급하거나, 웹사이트를 통해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는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 소프트웨어가 제조물에 해당된다고 판시(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3. 선고 2003가합32082 판결)

제조물책임 관련 주요 쟁점



“책임주체”

➤ 완성품 제조자/부품 및 원재료 제조자

- 완성품 전체에 대한 책임 부담하고 공급받은 부품에 의한 결함의 경우에도 책임
- 부품 및 원재료 제조자는 해당 부품이나 재료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경우 책임 부담

➤ 주문자 상표에 의한 생산

- OEM 제조업자의 경우 공급자는 실제 제조물을 만든 자로서 표시여부 불문 책임 부담
- 표시제조업자는 제조자로 표시한 자 또는 제조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한 자로서 책임 부담

➤ 수입업자 및 공급업자

- 수입업자는 자기 의사에 기인하여 제조물을 국내 유통시킨 공급자이므로 책임 부담
-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급업자는 합리적인 주의의무 해태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 부담

제조물책임 관련 주요 쟁점



“결함”

➤ 결함이란

- 당해 제조물에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 설계, 또는 표시상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법 제2조 제2호)

➤ 제조상·설계상·표시상 결함

- 제조상 결함이란, 제조물의 제조 또는 관리과정에서 조약한 재료가 혼입되거나 제품의 조립에 잘못 이 있는 등의 원인으로 제조물이 본래의 설계대로 제조되지 않아 안정성을 결한 경우
- 설계상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기획, 결정한 제조물의 설계에 이미 내재된 결함
- 표시상결함이란, 제조물 설계나 제조상의 결함은 없지만 제조물의 사용에 대한 지시, 설명이나 위험에 대한 경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결함

제조사의 면책 가능성



제조사의 대응 방향

➤ 사전적 조치

- 제품의 개발, 제조, 유통 전 단계에서의 안정성 확보
- 제조물책임보험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기존 보험에서 로봇영역 확대
 - 산업자원통상부 2025년까지 로봇 전용 보험 도입 추진

➤ 사후적 대응

- 제조물결함의 부존재를 주장
- 개발위험의 항변(공급한 시점의 과학, 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 발견 불가능)
- 법령준수의 항변
- 부품·원재료 제조사의 경우 설계, 제작상 지시 항변
- 제조사 스스로 공급한 제조물이 아님(절도·횡령·유실 등)을 주장

제조물책임 관련 판례



관련 판례

- ▶ 제품 결함 여부는 성능보장기간 내 피해가 발생하였는가 여부와 관련 없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8139 판결 참조)
- ▶ 제품의 특성 및 용도, 사용자의 기대 내용, 예상되는 위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 인식, 사용자의 위험 회피가능성, 대체설계 가능성 및 경제적 비용, 채택된 설계와 대체설계의 상대적 장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참조)
- ▶ 제조업자가 고도의 위험방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될 정도로 위험이 제거, 최소화 되었다고 확인되기 전에는 그 제품을 유통시키지 말아야하고 이러한 고도의 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한 채 그대로 제조, 판매한 경우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정성이 결여된 설계상 결함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53 판결 참조)



감사합니다.

최수경변호사
choesugyeong@naver.com